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176 호 2019. 5. 23.(목)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04호[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06호[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07호[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4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08호[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협의)사항 고시]..... 5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09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6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618호[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및 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7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620호[전자이미지공인 등록 공고]..... 8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622호[울산광역시 북구 읍주청정지역 지정 행정예고문]..... 9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알림마당 → 북구공보
--------	---

회								
람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기획홍보실(☎241-7125, 행정7125)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9. 8.>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고시 제 2019-104 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05월 23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울산도시공사		
	대표자 (성 명)	성 인 수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소하천명		제 2 울동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779번지		
	면적	173㎡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착공일로부터 2019. 09. 30.까지		
	목적 및 사유	울동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에 따른 하천선형 개선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 - 106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4로 56 외 4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5. 2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1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지구 A-1BL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4 로 56	2019-05-23	독립운동가 박상진 명칭 사용	2018-05-10
2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매곡지 구 C11B 6L	울산광역시 북구	당수골1 5길 34	2019-05-23	당수나무가 있는 당수골 명칭 사용하여서 도로명을 부여함.	2017-05-04
3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1022-5	울산광역시 북구	당수골2 8길 4	2019-05-23	당수나무가 있는 당수골 명칭 사용하여서 도로명을 부여함.	2017-05-04
4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동 116-1외 1 (116-6, 116-13)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 로 1110	2019-05-23	이 지역의 지형에 따라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9-08-20
5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지구 D19B 3L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20 길 29	2019-05-23	옛 지명으로 현재도 사용	2018-05-10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 - 107호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우리구 관내 도로명주소 변경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변경

종전주소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일	도로명주소 변경 사유
수박골1길 1	호계11길 1	2019. 5. 23.	도로개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5. 2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절차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도로명주소 폐지 후 건물 신축 등으로 새로이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가 건물번호 부여신청을 하여야 하며,
-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 등의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 2019-108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협의)사항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협의)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3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고시내역

허가 (협의) 년월일	허가 (협의) 번호	피허가자		점용장소	면적 (㎡)	허가(협의) 기간	점용목적	비 고
		주 소	성 명					
2019.5. 22.	2019 - 6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관광진흥과 장)	울산광역시 복구 신명동 332-6번지 일원	12	2019. 5. 22 ~ 2034. 5. 21.	울산권역 해파랑길 정비사업에 따른 포토존 설치	조건부 허 가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9 - 109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3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동해안로 1108	당사동 116-1	2019. 5. 23.	건축물멸실
동해안로 1108-1	당사동 116-6	2019. 5. 23.	건축물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5. 23.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9-618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및 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및 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은 보시기 바라며, 의견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23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및 문화시설)사업

나. 명 칭: 복구 평생학습관 건립공사

2. 위 치: 울산광역시 복구 연암동 1118-2번지

3. 사업개요:

가. 면 적: 2,000m²

나. 규 모: 강의실, 실습실, 조리실, 정보화교육실, 대강당, 퇴직자지원센터 등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나. 주 소: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 (연암동 1004-1)

5.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 ~ 2020. 12. 31.

6. 수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붙임 명세서와 같음

7. 열람기간: 공보 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8. 열람장소: 울산광역시 복구청 도서관과

9.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도서관과(☎052-241-72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 - 620호

공 고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제9조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등록 공인 내역

공 인 명	등록사유	등록일자 (사용개시일)	서 체	등록공인	비고
(민원사무 전용)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장인	송정동행정복지센터 통합민원발급기	2019. 5. 23.	한글전서		횡직인
	신규 구입	2019. 5. 23.	한글전서		종직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9 - 622호

울산광역시 북구 음주청정지역 지정 행정예고문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음주청정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기관·개인 또는 단체는 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23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사 업 명 : 음주청정지역 지정
2. 시행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
3. 지정취지 :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하여 건강한 사회 환경 조성과 건전한 음주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음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함.
4.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5. 행정예고 내용 : 관내 공원 6개소의 음주청정지역 지정
 - 지 정 일 : 2019. 7. 1.
 - 지정대상 : 6개소

연번	구분	공원명	소재지	면적(m ²)
1	근린공원	화봉제2공원	북구 연암동 378일대	12,025.9
2	어린이공원	우리공원	북구 호계동 263-2	2,066.0
3	어린이공원	중산어린이공원	북구 중산동 569	5,443.0
4	소공원	신천1공원	북구 신천동 99-4 일원	5,737.0
5	수변공원	박상진호수공원	북구 송정동 산14-1번지 일원	272,000.0
6	기타	오치골공원	북구 양정동 776-21	7,839.0

○ 지정범위 : 공원 면적 전체

6. 예고기간 : 2019. 5. 23. ~ 6. 12.(20일간)

7.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8 북구보건소(건강증진)
- 전 화 : 052)241-8166
- F A X : 052)241-8109

마. 제출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